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하병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74
----------	------

발의년월일 : 2019. 9. 6.
발 의 의 원 : 하병문 의원
강민구 의원
김지만 의원
김재우 의원
윤영애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정천락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안 제4조)
- 나.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안 제5조에서 제6조)
- 다. 혁신창업협의회 (안 제6조에서 제7조)
- 라. 행정지원 등(안 제10조에서 11조)
- 마. 조사 및 감독(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창업활동 지원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구·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
 4.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대구혁신창업협의회

제8조(혁신창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혁신창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자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술창업 관련 전문가
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정보 통신업 (J)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업시 설관 리, 사업지원 및 업태 서비스업(N)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P)	(P) 85	교육 서비스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Q) 86	보건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4	1차금속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관 계 법 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4. 5. 2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 6. 21.]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 7. 26.>

1. 제24조의3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24조의3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③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게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지원)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